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8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김현정 · 차지호 · 유동수
조정식 · 김남근 · 황명선
권향엽 · 이수진 · 강준현
박정현 · 양부남 · 민병덕
최혁진 · 이강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당선인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추가하여 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

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및 제190조의2, 제191조에 따른 당선인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u><신 설></u> 3. · 4. (생 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직선거법」 제187조 부터 제190조까지 및 제190조의2, 제191조에 따른 당선인 3. · 4.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

3. (생략) ⑥ · ⑦ (생략)	<u>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	---